

| | |
|--|--|
| <p><신 설> <신 설> ②~⑤(생 략)</p> | <p>6. S클래스 수익증권 7. S-P클래스 수익증권 ②~⑤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생 략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(생 략)</p> | 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제18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5. (생 략)</p> | 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5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<u>직접 또는 간접적으로</u>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.</p> |
| <p>제40조(보수) ①·② (생 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5. (생 략)</p> | <p>제40조(보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5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| |
|--|---|
|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| <p><u>6. S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u></p> <p>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</u></p> <p>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 <p><u>7. S-P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u></p> <p>나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</u></p> <p>다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u></p> <p>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7</u></p> |
| 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41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. S클래스 수익증권 : 환매금액의 100분의 0.15 이내</u></p> <p><u>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|

| | |
|--|--|
| 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 Cp클래스 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(생략)</p> | 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 <u>각 호</u>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. S클래스</u></p> <p><u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3. Cp클래스 · S-P클래스</u> 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 (C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 | 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 (Cp클래스 및 <u>S-P클래스</u>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